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혜은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
2022. 6. 8.(수)

제 목

최초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등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(부장검사 고진원)는 금일(6. 8.)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2년 이내에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甲을 **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**로 최초 기소함

※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한 사안임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甲

○ 공소사실 요지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

- A 주식회사는 '18. 11. 16.경 지주회사가 되었으므로, 2년 이내에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B 주식회사의 주식 6,000주를 처분하였어야 하나 계속 소유하여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을 위반함

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]

제18조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)

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3.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가.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

II 주요 수사 경과

- '22. 3. 공정위, 검찰에 고발
- ~'22. 6. 관계자 조사 등

III 참고 사항

- 과거 공정거래법은 계열사간 과도한 순환출자 등으로 소유구조가 왜곡되고 지주회사를 이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폐해를 우려해 지주회사 제도를 금지하였으나, 1999년 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함
- 다만,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특정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취함
- 본건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**경제력 집중을 심화한 사안**으로,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결정함
 - ※ 다만, 공정위 고발 이후 문제되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 함
- 본건은 공정거래법상 **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최초 기소하는 사례**로, 향후에도 검찰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☐